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097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채윤주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6. 16. 소외 D과 그 소유의 아산시 E, F, G, H 토지 약 5,200평 중 1,500평에 관한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2015. 11. 9. 위 D과 그 소유의 아산시 H, I, E, J 토지에 관한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100369 정산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을 거쳐 'C은 원고에게 금 394,334,922원(=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비용 및 수익금 361,532,385원 + 이 사건 제2차 계약과 관련한 비용 32,802,537원) 및 그 중 353,024,944원에 대하여는 2018. 2. 8.부터, 나머지 41,309,978원에 대하여는 2019. 1. 24.부터 2021. 1. 12.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 판결이 2021. 2. 3.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2020. 9. 16.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이 법원 2019고합222),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20노334, 파기자판, 징역 2년)이 2021. 6. 18. 확정되었다.

라. C 명의 우리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C 계좌'라 한다)로 2017. 3. 14. D으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바, 같은 날 10:55경 그 중 30,000,000원이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1)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제1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14:13경 그 중 20,000,000원이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이체'라 한다).

라. 이 사건 C 계좌로 입금된 위 100,000,000원2) 중 10,000,000원은 2017. 3. 24. 12:40경 이

사건 피고 제1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10,000,000원 상당 금원은 2017. 3. 29. 12:40경 이 사건 피고 제2계좌로 이체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제2이체’라 한다), 이 사건 제1입금과 합산한 이 사건 피고 제2계좌 잔액은 30,325,004원이 되었다.

마. 이 사건 피고 제2계좌에서 2017. 4. 17. C에게 5,000,000원, 2017. 4. 24. C에게 5,000,000원, 2017. 5. 10. C에게 5,000,000원, 2017. 5. 17. 소외 K(C에게 이 사건 제1, 2차 각 계약 등과 관련하여 토목설계 등 용역을 제공한 측량설계업자)에게 1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는바, 이 사건 피고 제2계좌 잔액은 3,722,856원(이자 수입, 유동 CC 출금 등 반영)이 되었다.

바.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7. 10. 31. 소외 L(C의 사촌누나)를 대리한 M(L의 남편)로부터 아산시 N 임야 992㎡ 및 O 대 3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피고 제1계좌에서 2017. 10. 31. 소외 M에게 21,000,000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이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7. 11. 16.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등기원인 2017. 10. 31. 매매), 2020. 7. 20. 소외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등기원인 2020. 7. 15. 매매).

사. C은 이 사건 각 이체 당시 채무초과로 무자력인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이체는 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이체금 합계 5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 요지

이 사건 피고 제1, 2계좌는 피고와 그 배우자인 C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계약 등 C의 사업과 그에 따른 입출금 등은 알지 못한 채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계좌에서 입출금, 이체 등을 해 주었을 뿐인바, ① 이 사건 제1, 2 이체 중 합계 25,000,000원 상당 금원은 C의 사업과 관련되어 그 지시에 따라 위 각 이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체되어 나간 것이므로, 이를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제1, 2 이체 중 나머지 5,000,000원 상당은 이 사건 피고 제2계좌에서 피고의 자금과 섞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C의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증여로 볼 수 없으며(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제3 이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C의 소유였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3 이체를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중략)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이 사건 제1, 2 이체 중 25,000,000원 부분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변론 전체 취지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피고 제1, 2 계좌의 각 입출금 내역(피고 급여 등 입금, 생활비 사용 및 C의 거래처 입출금)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좌는 피고(일부 명의수탁자)가 배우자인 C(일부 명의신탁자)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다만, 상당수의 입출금 등은 피고 직장 소재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바, C이 위 각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D이 2017. 3. 14. 이 사건 C 계좌로 입금한 100,000,000원에 기하여 이 사건 피고 제1계좌를 거쳐 이 사건 피고 제2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이 중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금원은 이 사건 제1, 2

이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C 내지 그 거래처인 K에 이체되었는바, 결국 C이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피고 제2계좌에서 위 25,000,000원 상당의 예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이체 중 25,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2 이체 중 나머지 5,000,000원 부분

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D이 2017. 3. 14. 이 사건 C 계좌로 입금한 100,000,000원에 기하여 이 사건 피고 제1계좌를 거쳐 이 사건 피고 제2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위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은 피고가 C과의 공동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이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양의무(C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추진하였으나 고정적인 직업 내지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관련 형사사건 판결 등), 이 사건 각 계좌 입출금 내역상정기적인 생활비 입금 등은 발견되지 않는바, 위 금액,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증여라기보다는 부양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 내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3이체 부분

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3이체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M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제3자인 P에게 매도되어 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제3이체는 C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피고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인인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당시 매도인도 명의신탁을 알고 있어 유효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제3자에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황에서 등기의 추정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이체는 채무초과로 무자력인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금이 이체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이체금 상당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별지

순번	증여일	증여금액
1	2017. 3. 14.	20,000,000원
2	2017. 3. 29.	10,000,000원
3	2017. 10. 31.	21,000,000원

1) 갑 제4호증에는 '6050601662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계좌를 지칭한다는 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2017. 3. 14.부터 2017. 3. 29.까지 위 100,000,000원 외에 이 사건 C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소액(합계 5,369원)의 이자 내지 할인금에 불과하다.